

2019학년도 10기 제10차 명덕외국어고등학교운영위원회 자문 결과

1. 일시 : 2020. 01. 29.(수) 16:00
2. 장소 : 명덕외국어고등학교 제1회의실
3. 안건 및 자문 내용

안건명	자문 내용										처리 결과	비고
1. 2019학년도 송백장학생 선정 자문(안)	1. 2019 송백장학금 신청 명단										원안 가결	
	연번	학년	이름	중위소 득 (%)	건강보험료 (6개월 평 균)	가족 수	미납액	추천 사유	비고	19' 선정		
	1	1	강00	-	172,275원	2명	-	이혼으로 인한 한부모가정 어릴 때는 아빠 밑에서 자라 동 생을 보살피며 가사일을 하였고 최근에는 일용직 일을 하시는 어 머니와 함께 살고 있음. 중학교 때까지 학원을 다닌 적 없이 혼 자 공부하고 있어 학교생활에 어 려움을 겪는 중.	사회다양성(한부모)	○		
	2	1	강00	77	128,840원	5명	-	서울희망장학금이 전액 지원이 아니므로 현재 교육비 미납임.	사회다양성(다자녀) 서울희망장학금 분 기별 685,500원 (3,4 분기 지원)			
	3	1	김00	-	55,690원	4명	-	어려운 가정형편에도 자기 주도 적 학습을 해내고 있는 학생임. 독서실 비용에 부담을 느껴 집에 서 주로 공부를 하고 있으며, 뚜 렷한 진로목표를 가지고 이를 실 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강서구장학금 100 만원	○		
	4	2	임00	63	62,290원	2명	1,334,500	암으로 투병하던 아버지가 돌아 가시며 차상위 자격 탈락. 어머니도 병간호로 경력이 단절 되어 현재 단기 간호사 업무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음 경제적 도 움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임. 학생은 학업의욕이 높고 잠재가 능성이 많음.	기회균등전형 서울희망장학금 분 기별 685,500원 (1~4분기 지원)	○		
	5	2	이00	91	277,040원	4명	-	학교생활에서 바르고 성실하게 자신의 목표와 꿈을 향하여 노력 하고 있는 학생임. 어려운 경제상 황에서도 열심히 학습한 결과 성 적이 향상되었으며 발전 가능성 이 높은 학생임. 부모님의 경제적 부담없이 학업 을 정진할 수 있도록 송백장학생 에 추천함.	서울희망장학금 분 기별 685,500원 (4분기 1회 지원)			
	6	2	하00	-	143,400원	3명	-	부모님의 이혼 후 경제적 어려움 을 겪고 있음. 특히 형이 대학에 진학하면서 학비 문제로 생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움. 아버지와 연 락이 닿지 않아 장학금을 신청하 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사회다양성(한부모) 서울희망장학금 분 기별 685,500원 (3,4 분기 지원) 父 서류 미제출			
	7	2	정00	17	13,550원	2명	1,026,400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로 교육비 지원이 되지 않는 일부 기숙사비 와 조식식비를 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교육비 지원대상자로 2018년 6월부터 학비를 지원받 고 있으나, 교육비 신청이 늦어져 어려운 사정에 학비가 지속적으 로 미납되고 있음. 학생은 자신이 세운 목표를 이루 기 위해 늘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으며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송백장학생으로 추천함	기회균등전형 교육급여수급자 '18 송백장학생	○		

		8	3	홍00	-	92,557원	7명	2,577,090	집이 경매로 넘어가서 경매배당 소송이 진행 중이며, 배당을 받지 못해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 경매 배당 소송에서 주거하던 집이 매각되어 거주할 집이 없어서 이혼 중이던 학생의 아버지와 재결합 하였으며 용자를 받아 현재 주거지로 이사함. 최근 학생의 아버지가 실직을 하였고 공과금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 장학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한 학생임.	기회균등전형	○																									
		9	3	조00	-	86,375원	2명	1,770,000	최저시급 상승으로 어머니의 월급이 조금 올라 기초수급 자격에서 벗어남. 한부모 가정에서 자란 학생이 직장 생활로 힘든 어머니를 위해 마음 편히 학교 생활할 수 있도록 송백 장학생으로 추천함.	기회균등전형 서울희망장학금 분 기별 685,500원 (1~4분기 지원)	○																									
		10	3	오00	-	151,780원	5명	1,770,000	다자녀 가정의 장녀로 아버지의 급여로 자녀들의 교육비와 생활비를 부담하기 어려운 상황. 어머니의 자영업을 통해 생활비 부담을 덜어보려 하였으나 최근 경기 악화와 소비위축으로 인한 매출저하로 사정이 더 어려워짐. 학비는 대출을 통해 납부해왔지만, 대출도 한계에 달한 상태임.	사회다양성(다자녀)	○																									
		2. 선정결과 : 1, 3, 4, 7, 8, 9, 10번 학생 (총7명)																																		
		3. 선정근거 : 중위소득 및 건강보험료가 낮은 학생을 기준으로 미납액을 고려하여 선정																																		
		4. 지급액 : 개인별 1,000,000원																																		
		5. 행정처리																																		
		가. 1~2월 내 장학금 지급 예정																																		
		나. 미납금액이 있는 경우 미납금 우선 처리																																		
2.	2020학년도 신입생 체육복 공동구매 자문 (안)	1. 체육복 공동구매추진 일정																																		
		가. 체육복 공동구매 추진위원회 회의 : 2019. 11. 15.(금)																																		
		나. 공고(학교홈페이지) : 2019. 11. 29.(금) ~ 12. 06.(금)																																		
		다. 제안 설명회 : 2019. 12. 16. 16시																																		
		라. 업체 결정 : 2019. 12. 16. 18시																																		
		마. 계약 : 2020. 01. 14.																																		
		2. 참가 업체 및 입찰금액																																		
		<table><tr><td>번호</td><td>업체</td><td>입찰금액 (동복, 하복)</td><td>입찰가격(합)</td><td>점수</td></tr><tr><td>1</td><td>드림상사</td><td>동복(33,000) 하복(22,000)</td><td>55,000원</td><td>81</td></tr><tr><td>2</td><td>올림픽상사</td><td>동복(34,000) 하복(21,000)</td><td>55,000원</td><td>83</td></tr><tr><td>3</td><td>서울패션</td><td>동복(32,000) 하복(22,000)</td><td>54,000원</td><td>94.5</td></tr><tr><td>4</td><td>(주)준타스</td><td>동복(30,000) 하복(25,000)</td><td>55,000원</td><td>84.8</td></tr></table>										번호	업체	입찰금액 (동복, 하복)	입찰가격(합)	점수	1	드림상사	동복(33,000) 하복(22,000)	55,000원	81	2	올림픽상사	동복(34,000) 하복(21,000)	55,000원	83	3	서울패션	동복(32,000) 하복(22,000)	54,000원	94.5	4	(주)준타스	동복(30,000) 하복(25,000)	55,000원	84.8
번호	업체	입찰금액 (동복, 하복)	입찰가격(합)	점수																																
1	드림상사	동복(33,000) 하복(22,000)	55,000원	81																																
2	올림픽상사	동복(34,000) 하복(21,000)	55,000원	83																																
3	서울패션	동복(32,000) 하복(22,000)	54,000원	94.5																																
4	(주)준타스	동복(30,000) 하복(25,000)	55,000원	84.8																																
		※ 체육복 공동구매 심사결과 서울패션 선정																																		
3.	2020학년도 명덕학사 운영규 정 개정 자문(안)	1. 운영규정 신규대조표																																		
		<table><tr><td>구분</td><td>개정 전</td><td>개정 후</td><td>비고</td></tr><tr><td>제 3 장 입사와 퇴사</td><td>제20조 【생활실 변경】 다음의 사유 발생 시 기획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후 운영위원장의 허락을 득하여 생활실을 변경할 수 있다. 생활실의 변경은 무작위 추첨에 의한다.</td><td>제20조 【생활실 변경】 다음의 사유 발생 시 기획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후 운영위원장의 허락을 득하여 생활실을 변경할 수 있다. 생활실의 변경은 무작위 추첨에 의한다.</td><td></td></tr></table>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제 3 장 입사와 퇴사	제20조 【생활실 변경】 다음의 사유 발생 시 기획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후 운영위원장의 허락을 득하여 생활실을 변경할 수 있다. 생활실의 변경은 무작위 추첨에 의한다.	제20조 【생활실 변경】 다음의 사유 발생 시 기획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후 운영위원장의 허락을 득하여 생활실을 변경할 수 있다. 생활실의 변경은 무작위 추첨에 의한다.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제 3 장 입사와 퇴사	제20조 【생활실 변경】 다음의 사유 발생 시 기획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후 운영위원장의 허락을 득하여 생활실을 변경할 수 있다. 생활실의 변경은 무작위 추첨에 의한다.	제20조 【생활실 변경】 다음의 사유 발생 시 기획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후 운영위원장의 허락을 득하여 생활실을 변경할 수 있다. 생활실의 변경은 무작위 추첨에 의한다.																																		

	①정서불안, 신경쇠약, 비전염성 질환 등의 사유로 진단서를 첨부한 경우 ②기타 생활실 변경의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①정서불안, 신경쇠약, 비전염성 질환 등의 사유로 진단서를 첨부한 경우 ②생활실 배정 후 중도퇴사로 인하여 생활실 조정이 필요한 경우 ③기타 생활실 변경의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4. 2019학년도 생활규정 개정 자문(안)	(1) 학교 공론화에 따른 학교생활규정 개정 안건 ① 문구 변경 및 조항 추가에 대한 건 <table><thead><tr><th>현행</th><th>개정안</th></tr></thead><tbody><tr><td> 2장 생활선도위원회 4조【구성】 초·중등교육법 제18조(학생징계) 제1항과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8항에 근거하여 학생들의 생활지도에 관한 실무를 담당하고, 이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생활선도위원회를 둔다. 5조【기능】 생활선도위원회는 학생의 생활지도 전반에 대한 사항을 협의하고 지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②본 생활선도위원회는 학생생활 중, 교외상 시상에 관한 사항, 학생들이 이의를 제기한 사항, 학생 징계사안(학교내 봉사 이상) 등이 발생했을 때, 소집하고 이를 심의의결한다. ③본 생활선도위원회는 2/3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④생활선도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대하여 학생 또는 그 학부모가 3일 이내에 재심 요청을 할 경우 이를 수용한다. ⑤사안 발생 시에 인성교육부 부장과 인성교육부 교사로 구성된 생활선도소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징계 여부를 심의한다. 6장 징계 44조【징계 원칙】 초·중등교육법 제18조(학생징계) 제1항 학생의 징계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에 의거하여 징계 원칙은 다음 각 항과 같이 한다. 4장 학생생활 - 3절 정보통신 20조【정보통신기기 관리】 ①교내에서 휴대전화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하지 않는다. </td><td> 2장 생활선도위원회 4조【구성】 초·중등교육법 제18조(학생징계) 제1항과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8항에 근거하여 학생들의 생활지도에 관한 실무를 담당하고, 이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u>생활교육위원회</u>를 둔다. 5조【기능】 <u>생활교육위원회</u>는 학생의 생활지도 전반에 대한 사항을 협의하고 지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②본 <u>생활교육위원회</u>는 학생생활 중, 교외상 시상에 관한 사항, 학생들이 이의를 제기한 사항, 학생 징계사안(학교내 봉사 이상) 등이 발생했을 때, 소집하고 이를 심의의결한다. ③본 <u>생활교육위원회</u>는 2/3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④<u>생활교육위원회</u>의 결정사항에 대하여 학생 또는 그 학부모가 3일 이내에 재심 요청을 할 경우 이를 수용한다. ⑤사안 발생 시에 인성교육부 부장과 인성교육부 교사로 구성된 <u>생활교육소위원회</u>에서 이에 대한 징계 여부를 심의한다. 6장 징계 44조【징계 원칙】 초·중등교육법 제18조(학생징계) 제1항 학생의 징계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에 의거하여 징계 원칙은 다음 각 항과 같이 한다. ⑤장애 학생, 다문화 학생 등 소수자 학생이 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될 경우 진술권 보장을 위한 특별 지원 절차(신체적, 언어적 측면 모두 포함)를 마련한다. ⑥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된 학생의 개인정보(폭력 피해 경험 포함)보호를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 조사와 징계 과정에서 학생의 인권권과 학습권 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한다. 4장 학생생활 - 3절 정보통신 20조【정보통신기기 관리】 ①교내에서 휴대전화는 교육 활동을 위하여 소지·사용할 수 있다. </td></tr></tbody></table>			현행	개정안	2장 생활선도위원회 4조【구성】 초·중등교육법 제18조(학생징계) 제1항과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8항에 근거하여 학생들의 생활지도에 관한 실무를 담당하고, 이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생활선도위원회를 둔다. 5조【기능】 생활선도위원회는 학생의 생활지도 전반에 대한 사항을 협의하고 지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②본 생활선도위원회는 학생생활 중, 교외상 시상에 관한 사항, 학생들이 이의를 제기한 사항, 학생 징계사안(학교내 봉사 이상) 등이 발생했을 때, 소집하고 이를 심의의결한다. ③본 생활선도위원회는 2/3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④생활선도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대하여 학생 또는 그 학부모가 3일 이내에 재심 요청을 할 경우 이를 수용한다. ⑤사안 발생 시에 인성교육부 부장과 인성교육부 교사로 구성된 생활선도소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징계 여부를 심의한다. 6장 징계 44조【징계 원칙】 초·중등교육법 제18조(학생징계) 제1항 학생의 징계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에 의거하여 징계 원칙은 다음 각 항과 같이 한다. 4장 학생생활 - 3절 정보통신 20조【정보통신기기 관리】 ①교내에서 휴대전화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하지 않는다.	2장 생활선도위원회 4조【구성】 초·중등교육법 제18조(학생징계) 제1항과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8항에 근거하여 학생들의 생활지도에 관한 실무를 담당하고, 이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u>생활교육위원회</u>를 둔다. 5조【기능】 <u>생활교육위원회</u>는 학생의 생활지도 전반에 대한 사항을 협의하고 지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②본 <u>생활교육위원회</u>는 학생생활 중, 교외상 시상에 관한 사항, 학생들이 이의를 제기한 사항, 학생 징계사안(학교내 봉사 이상) 등이 발생했을 때, 소집하고 이를 심의의결한다. ③본 <u>생활교육위원회</u>는 2/3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④<u>생활교육위원회</u>의 결정사항에 대하여 학생 또는 그 학부모가 3일 이내에 재심 요청을 할 경우 이를 수용한다. ⑤사안 발생 시에 인성교육부 부장과 인성교육부 교사로 구성된 <u>생활교육소위원회</u>에서 이에 대한 징계 여부를 심의한다. 6장 징계 44조【징계 원칙】 초·중등교육법 제18조(학생징계) 제1항 학생의 징계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에 의거하여 징계 원칙은 다음 각 항과 같이 한다. ⑤장애 학생, 다문화 학생 등 소수자 학생이 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될 경우 진술권 보장을 위한 특별 지원 절차(신체적, 언어적 측면 모두 포함)를 마련한다. ⑥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된 학생의 개인정보(폭력 피해 경험 포함)보호를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 조사와 징계 과정에서 학생의 인권권과 학습권 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한다. 4장 학생생활 - 3절 정보통신 20조【정보통신기기 관리】 ①교내에서 휴대전화는 교육 활동을 위하여 소지·사용할 수 있다.	원안 가결
현행	개정안							
2장 생활선도위원회 4조【구성】 초·중등교육법 제18조(학생징계) 제1항과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8항에 근거하여 학생들의 생활지도에 관한 실무를 담당하고, 이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생활선도위원회를 둔다. 5조【기능】 생활선도위원회는 학생의 생활지도 전반에 대한 사항을 협의하고 지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②본 생활선도위원회는 학생생활 중, 교외상 시상에 관한 사항, 학생들이 이의를 제기한 사항, 학생 징계사안(학교내 봉사 이상) 등이 발생했을 때, 소집하고 이를 심의의결한다. ③본 생활선도위원회는 2/3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④생활선도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대하여 학생 또는 그 학부모가 3일 이내에 재심 요청을 할 경우 이를 수용한다. ⑤사안 발생 시에 인성교육부 부장과 인성교육부 교사로 구성된 생활선도소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징계 여부를 심의한다. 6장 징계 44조【징계 원칙】 초·중등교육법 제18조(학생징계) 제1항 학생의 징계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에 의거하여 징계 원칙은 다음 각 항과 같이 한다. 4장 학생생활 - 3절 정보통신 20조【정보통신기기 관리】 ①교내에서 휴대전화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하지 않는다.	2장 생활선도위원회 4조【구성】 초·중등교육법 제18조(학생징계) 제1항과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8항에 근거하여 학생들의 생활지도에 관한 실무를 담당하고, 이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u>생활교육위원회</u>를 둔다. 5조【기능】 <u>생활교육위원회</u>는 학생의 생활지도 전반에 대한 사항을 협의하고 지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②본 <u>생활교육위원회</u>는 학생생활 중, 교외상 시상에 관한 사항, 학생들이 이의를 제기한 사항, 학생 징계사안(학교내 봉사 이상) 등이 발생했을 때, 소집하고 이를 심의의결한다. ③본 <u>생활교육위원회</u>는 2/3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④<u>생활교육위원회</u>의 결정사항에 대하여 학생 또는 그 학부모가 3일 이내에 재심 요청을 할 경우 이를 수용한다. ⑤사안 발생 시에 인성교육부 부장과 인성교육부 교사로 구성된 <u>생활교육소위원회</u>에서 이에 대한 징계 여부를 심의한다. 6장 징계 44조【징계 원칙】 초·중등교육법 제18조(학생징계) 제1항 학생의 징계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에 의거하여 징계 원칙은 다음 각 항과 같이 한다. ⑤장애 학생, 다문화 학생 등 소수자 학생이 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될 경우 진술권 보장을 위한 특별 지원 절차(신체적, 언어적 측면 모두 포함)를 마련한다. ⑥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된 학생의 개인정보(폭력 피해 경험 포함)보호를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 조사와 징계 과정에서 학생의 인권권과 학습권 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한다. 4장 학생생활 - 3절 정보통신 20조【정보통신기기 관리】 ①교내에서 휴대전화는 교육 활동을 위하여 소지·사용할 수 있다.							

② 교내 학생생활 중 복장 규정에 대한 건

현행	개정안
4장 학생생활 - 1절 교내생활 15조【용의복장】 ①복장 ■ 1. 동복과 하복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된 교복과 생활복을 착용하되 학교에서 지정한 기간(환절기)동안 동·하복을 혼용한다. ■ 2. 교내에서 체육시간 외에는 항상 교복 또는 생활복을 착용한다.	4장 학생생활 - 1절 교내생활 15조【용의복장】 ①복장 ■ 1. <u>동복과 하복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된 교복과 생활복을 착용하되 학교에서 지정한 기간(환절기)동안 동·하복을 혼용한다. 혼용 기간은 학생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정한다.</u> ■ 2. <u>교내에서 체육시간 외에는 항상 교복 또는 생활복을 착용한다.(변경 없음)</u>
4장 학생생활 - 1절 교내생활 15조【용의복장】 ①복장 ■ 4. 남학생은 교복의 바지통을 줄이지 않으며 바지가 끌리지 않아야 한다. ■ 5. 여학생은 교복 상의 길이·폭을 변형하거나, 치마폭을 좁혀 입으면 안 되며, 교복 상의와 하의가 5cm 이상 겹쳐지는 상태에서 치마의 밑단선이 무릎선 아래로 내려와야 한다.	4장 학생생활 - 1절 교내생활 15조【용의복장】 ①복장 ■ 4. <u>교복의 바지통을 변형하거나, 바지 길이를 변형하여 입으면 안 된다.</u> ■ 5. <u>교복 상의 길이·폭을 변형하거나 치마 길이·폭을 변형하여 입으면 안 된다.</u>

③ 교내 학생생활 중 두발 규정에 대한 건

현행	개정안
4장 학생생활 - 1절 교내생활 15조【용의복장】 ③두발 ■ 1. 남학생의 머리형은 학생 신분에 맞도록 단정하게 해야 한다. ■ 2. 여학생은 머리 길이에 제한이 없으나 항상 단정하게 해야 한다. 학생 신분에 어긋나는 액세서리는 착용하지 않도록 한다. ■ 3. 머리는 염색, 부분 염색, 파마를 금하며 과도한 모발손질용품의 사용도 금한다.	4장 학생생활 - 1절 교내생활 15조【용의복장】 ③두발 ■ 1,2. <u>학생의 머리 길이는 제한이 없으나 항상 단정한 머리 형태를 유지해야 한다.</u> ■ 3. <u>염색은 짙은 갈색 계열까지만 허용한다. 매직은 허용하며, 파마는 C컬, S컬, 굵은 웨이브 펌까지만 허용한다.</u> <u>개정소위원회 최종 제안)</u> 염색은 짙은 갈색 계열까지만 허용한다. 매직은 허용하며, 파마는 C컬, S컬 같은 굵은 웨이브 펌까지만 허용한다.

④ 교내 학생생활 중 양말, 가방 규정에 대한 건

현행	개정안
4장 학생생활 - 1절 교내생활 15조【용의복장】 ⑤양말 ■ 1. 동복 착용 시에는 남학생은 양말을 신도록 하며 여학생은 스타킹을 신되, 무늬가 있거나 망사스타킹 등 학생답지 못한 스타킹은 금한다.	4장 학생생활 - 1절 교내생활 15조【용의복장】 ⑤양말 ■ 1. <u>동복 착용 시에는 양말이나 스타킹을 신되, 무늬가 있거나 망사스타킹 등 과도한 스타일의 스타킹은 금한다.</u>
4장 학생생활 - 1절 교내생활 15조【용의복장】 ⑥가방 ■ 1. 반드시 학생다운 책가방을 휴대하며, 성인용 가방, 핸드백, 혐오감을 주는 도안이나 디자인의 가방의 휴대는 금한다.	4장 학생생활 - 1절 교내생활 15조【용의복장】 ⑥가방 ■ 1. <u>고가의 화려한 핸드백, 혐오감을 주는 도안이나 디자인의 가방의 휴대는 금한다.</u>

⑤ 교내 학생생활 중 장신구 착용 및 화장 규정에 대한 건

현행	개정안
4장 학생생활 - 1절 교내생활 15조【용의복장】 ⑦기타 ■ 1. 장신구의 착용을 금한다. ■ 4. 눈썹, 입술 등 얼굴 화장이나 색조 화장을 해서는 안 된다.	4장 학생생활 - 1절 교내생활 15조【용의복장】 ⑦기타 ■ 1. 장신구는 지름 4mm이하 스테드 귀걸이, 반지, 팔찌, 목걸이까지만 허용한다.(피어싱은 허용하지 않는다.) ■ 4. 눈썹, 입술, 피부 화장은 허용하되, 눈 화장을 포함한 과도한 무대 화장은 금지한다.

⑥ 고별점자 및 징계자 학생회 임원 출마 자격에 대한 건

현행	개정안
4장 학생생활 - 4절 학생회 27조【직무 및 선출】 ②선출 ■ 2. 회장 및 부회장은 품행이 바르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로, 출석 현황이 출석율 90% 이상이며, '학교 내 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자로 한다.	4장 학생생활 - 4절 학생회 27조【직무 및 선출】 ②선출 ■ 2. 회장 및 부회장은 품행이 바르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로, 출석 현황이 출석율 90% 이상이며, '학교 내 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자로 한다. (현행 유지)

(2) 현재 상벌점규정 개정 안건

① 상점카드 문구 변경 (현재 시행중)

공론화에 따른 벌점카드 내용 변경

- 무단외출 (1, 3점 중복표기 --> 3점으로 표기)
- 유실물 습득 및 신고 (상점 1점)

② 상벌점 누적에 관한 논의

제40조【벌점제】벌점제의 기본방향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인성교육부에 제출된 벌점 카드에 의한 점수는 담당교사가 누가기록부에 기록, 관리하며 매월 말 통계를 내어 규정에 따라 처리하되 벌점은 학년말에 소멸된다.

제41조【상점제】

①상점은 선행 학생 추천 및 개인 벌점을 감경하는데 각각 이용한다.

⑥부여받은 상점은 매 학년 말 벌점을 상쇄할 수 있고, 담당교사가 누가기록부에 재학기간 중 기록, 관리한다.

개정소위원회 최종 제안) 상점을 소멸하진 않고, 해당학년에 벌점소멸을 위한 상점사용을 4점으로 한한다.

③ 고사 중 부정행위자에 대한 이중처벌 논의

<명덕외고 벌점 기준표>

내용	항목	위반항목	벌점	비고
학교 일과 (10점)	39	교의성이 있는 고사부정행위(해당과목 0점 처리 포함)	10	생활선도위 원회 회부
	40	교사 지도에 불응, 도주, 불손한 행위	10	

<명덕외고 학업성적관리규정>

제15조 (고사 시행 및 감독)

⑮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1. 휴대전화, MP3 플레이어, 전자 사전, 스마트 시계 등을 통한 부정 행위
2. 다른 수험생에게 답안을 보여 줄 것을 강요하는 행위
3.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4. 부정한 휴대물을 소지하고 있거나, 다른 수험생과 쪽지나 수정테이프 교환,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주고받는 행위 5.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해서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6. 기타 시험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행위 제18조 (인정점 부여) ⑤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한다. 1. 부정행위자 2. 부정행위 협조자 부정행위 해당 평가 고사 과목(영역)의 점수를 0점으로 처리한다. 개정소위원회 최종 제안) 학업성적 관리규정에 나와 있는 항목 중 고의성 여부는 생활선도위원회에서 결정함. 고의성의 없는 경우는 해당과목 0점 처리만, 고의성이 있는 경우는 해당과목 0점 처리와 1단위 위반으로 학교교내봉사 3일에 징계를 받는다. ④ 허가되지 않은 복장에 대한 벌점 논의 <명덕외고 벌점 기준표> <table><tr><th>내용</th><th>항목</th><th>위반항목</th><th>벌점</th><th>비고</th></tr><tr><td rowspan="2">학교일과 (1점)</td><td rowspan="2">1</td><td>허가되지 않은 복장으로 등하교시(한 가지 항목위반시)</td><td>1</td><td></td></tr><tr><td>허가되지 않은 복장으로 등하교시(두 가지 항목 위반시)</td><td>2</td><td></td></tr></table> 개정소위원회 최종 제안) 복장 중 한 항목만 위반한 경우 벌점 1점, 두 가지 항목에 대한 위반을 하는 경우는 벌점 2점을 부여한다.	내용	항목	위반항목	벌점	비고	학교일과 (1점)	1	허가되지 않은 복장으로 등하교시(한 가지 항목위반시)	1		허가되지 않은 복장으로 등하교시(두 가지 항목 위반시)	2						
내용	항목	위반항목	벌점	비고															
학교일과 (1점)	1	허가되지 않은 복장으로 등하교시(한 가지 항목위반시)	1																
		허가되지 않은 복장으로 등하교시(두 가지 항목 위반시)	2																
5. 2019학년도 학교발전기금 송백장학금 지급 자문(안)	1. 학교발전기금 장학금 지급 1) 송백장학금 지급 - 지급금액 : 7,000,000원 - 지급 일 : 2020. 01. 14.(화) - 장학생명단 1학년 강00 1,000,000원 1학년 김00 1,000,000원 2학년 임00 1,000,000원 2학년 정00 1,000,000원 3학년 홍00 1,000,000원 3학년 조00 1,000,000원 3학년 오00 1,000,000원 - 장학금 지급방법 : 학생 CMS계좌 및 미납 학생은 학교회계 계좌로 입금	원안 가결																	
6. 2019학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 자문(안)	1. 2019학년도 명덕외국어고등학교 학교회계 세입, 세출 1차 추가경정 예산 <table><tr><td></td><td>2019 본예산</td><td>추경예산</td><td>증감액</td></tr><tr><td>일반재원</td><td>21,805,111,000원</td><td>21,252,642,000원</td><td>-552,469,000원</td></tr><tr><td>정산재원(성립전)</td><td></td><td>978,287,000원</td><td>978,287,000원</td></tr><tr><td>합 계</td><td>21,805,111,000</td><td>22,230,929,000</td><td>425,818,000</td></tr></table>		2019 본예산	추경예산	증감액	일반재원	21,805,111,000원	21,252,642,000원	-552,469,000원	정산재원(성립전)		978,287,000원	978,287,000원	합 계	21,805,111,000	22,230,929,000	425,818,000	원안 가결	자료 첨부
	2019 본예산	추경예산	증감액																
일반재원	21,805,111,000원	21,252,642,000원	-552,469,000원																
정산재원(성립전)		978,287,000원	978,287,000원																
합 계	21,805,111,000	22,230,929,000	425,818,000																

7. 2020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자문(안)	1. 2020학년도 명덕외국어고등학교 학교회계 세입, 세출 예산 - 세입 18,254,138,000원으로 예산 편성 - 세출 18,254,138,000원으로 예산 편성	원안 가결	자료 첨부																									
8. 2020학년도 기숙사비 책정 자문(안)	1. 2020학년도 기숙사비 책정 가. 국내 학생 1개월 : 330,000원(월-토요일 사용) 나. 외국인학생 1개월 : 380,000원(월-일요일 사용)(주말사감비 별도) 다. 기숙사비 산정 기준 <table border="1"><thead><tr><th rowspan="2">구 분</th><th colspan="5">기숙사비</th><th rowspan="2">비고</th></tr><tr><th>인건비</th><th>공공요금</th><th>일반운영비</th><th>장기수선 충당금</th><th>합계</th></tr></thead><tbody><tr><td>금액</td><td>231,660원</td><td>33,000원</td><td>45,540원</td><td>19,800원</td><td>330,000원</td><td rowspan="2">1인 1개월 기준 월 납부 금액 (10,000원 인상)</td></tr><tr><td>비율</td><td>70.2%</td><td>10.0%</td><td>13.8%</td><td>6.0%</td><td>100%</td></tr></tbody></table> (산출기초 : 별도 자료 참조) 라. 기숙사비 인상 사유 - 인건비 및 공공요금 매년 인상으로 세출 예산 증가	구 분	기숙사비					비고	인건비	공공요금	일반운영비	장기수선 충당금	합계	금액	231,660원	33,000원	45,540원	19,800원	330,000원	1인 1개월 기준 월 납부 금액 (10,000원 인상)	비율	70.2%	10.0%	13.8%	6.0%	100%	원안 가결	자료 첨부
구 분	기숙사비					비고																						
	인건비	공공요금	일반운영비	장기수선 충당금	합계																							
금액	231,660원	33,000원	45,540원	19,800원	330,000원	1인 1개월 기준 월 납부 금액 (10,000원 인상)																						
비율	70.2%	10.0%	13.8%	6.0%	100%																							
9. 2020학년도 학생 및 교직원 급식비 단가 인상 자문(안)	○ 2020학년도 학생 및 교직원 급식비 단가 인상 <table border="1"><thead><tr><th>구분</th><th>2019년 현행</th><th>2020년 인상</th></tr></thead><tbody><tr><td>중학교(중식)</td><td>5,050원</td><td>5,263원</td></tr><tr><td>고등학교(중식)</td><td>5,270원</td><td>5,430원</td></tr><tr><td>고등학교(조.석식)</td><td>5,370원</td><td>5,530원</td></tr><tr><td>교직원</td><td>5,400원</td><td>5,600원</td></tr></tbody></table> ※ 중학생:213원, 고등학생:160원, 교직원:200원 인상	구분	2019년 현행	2020년 인상	중학교(중식)	5,050원	5,263원	고등학교(중식)	5,270원	5,430원	고등학교(조.석식)	5,370원	5,530원	교직원	5,400원	5,600원	원안 가결											
구분	2019년 현행	2020년 인상																										
중학교(중식)	5,050원	5,263원																										
고등학교(중식)	5,270원	5,430원																										
고등학교(조.석식)	5,370원	5,530원																										
교직원	5,400원	5,600원																										